

[국책과제쟁점] 국책과제,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의 연구용도 외 부정사용 금액이 정부출연금의 5% 정도 사안에서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+ 3년 참여제한 제재처분



국책과제, 국가연구개발사업 적용법령과 하위규정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. 과학기술기본법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5년 정부부처마다 조금씩 다른 규정을 통일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을 거쳐 그 결과물을 공표하였습니다. 그 중 2015년 7월 공표된 "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"도 있습니다.

앞서 소개한 판결사안은 산자부 국책과제로서 전문기관 산기평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입니다. 소관 정부부처와 적용법령이 다른 사안에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(공동관리규정)에 따른 "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"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.

분쟁사안에서 사업비의 연구목적 외 사용 금액은 정부출연금의 5% 정도입니다. 아래와

같은 미래창조과학부 제재조치 매뉴얼에 따르면 참여제한 3년은 같지만, 환수범위는 정부출연금 전액환수가 아니라 부정사용금액으로 적발된 해당 금액만으로 전혀 다릅니다.

|   |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|----------------|
| 5.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<br>※ 용도 외 사용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감 가능 | 5년 이내 |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|
| 가.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: 3년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|
| 1) 연구개발비를 횡령, 편취(騙取), 유용(流用) 등 부정 집행한 경우<br>가)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편취한 경우  | 3년    | 편취한 금액         |
| 나) 참여연구원이 아닌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  |       | 해당 인건비         |
| 다) 연구장비·재료를 거짓으로 구입·설치·임차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집행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거짓·과다계상 집행금액   |
| 라)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회수하여 재분배한 경우  |       | 회수한 금액         |
| 마)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활동으로 연구활동비를 집행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해당금액           |
| 바) 그 밖에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 |       | 부정집행금액         |
| 2)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(점검시 계정에 회복)하여 사용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년    | 전용금 이내         |
| 3) 사업비 사용실적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| 3년    |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  |
| 4) 시설·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 | 2년    | 이내             |

참고로 위 분쟁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"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조치 매뉴얼"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.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제재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.

**연구목적 외 사용 금액이 정부출연금의 5% 정도인데도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**

은 너무 가혹한 제재처분으로서 전문기관의 재량권 일탈·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

판결 요지

"회사는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 등을 과제 수행을 위하여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할 의무를 가지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, 문제된 금액이 전체 지원금에 비하여 크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무가 경감된다고 볼 수는 없다.

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·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."

행정심판소송, 이의신청, 집행정지, 민형사소송, 기술료, 모인특허, 법률자문, A~Z 수행경력

---

T. 02-591-0657 E. [kkh@kasanlaw.com](mailto:kkh@kasanlaw.com) H. [www.kasanlaw.com](http://www.kasanlaw.com)